외화(원화)예금 자동대체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외화(원화)예금 자동대체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를 제공하는 ㈜하나은행 (이하 “은행”이라 합니다)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(이하 “이용자”이라 합니다)간에 서비스 이용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 종류)
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1. 자동이체 서비스
2. 국내예금 해외송금 자동대체 서비스

제3조 (자동이체서비스)
① 은행은 이용자의 자동이체서비스 신청 (팩스 또는 e-mail에 의한 신청 포함. 이하 같다)에 따라 이체지정일에 통장, 수표 또는 지급청구서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이체 의뢰금액을 출금하여 이체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대금을 결제합니다.
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, 채무 등 이체 대상거래만을 지정하고 이체 지정일 및 이체금액에 대한 지정 없이 자동이체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은행은 그 이체 대상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이체합니다.
③ 출금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화된 예금 잔액에 한합니다.
④ 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니다.
1.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이체의뢰금액보다 적을 때
2. 입금계좌가 해지되었을 때
3. 서비스 신청일이 입 ·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 당일일 때
4. 출금계좌에 법적인 지급 제한이 등록되었거나, 자금세탁 또는 범죄와 연루된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
5. 전쟁, 천재지변, 전산장애, 정전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⑤ 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 이체처리 순서는 은행이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⑥ 은행이 자동이체 서비스에 따른 이체를 완료한 후에는 이용자는 이체내용에 대하여 정정 또는 취소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제4조 (국내예금 해외송금 자동대체 서비스)
① 은행은 비거주자인 이용자의 해외송금 자동대체서비스 신청에 따라 고객이 가입한 외화 저축성예금 및/또는 비거주자 자유원 저축성예금이 만기가 된 경우 당해 만기일에 통장, 수표 또는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 예금의 원리금을 해외로 자동 송금합니다.
② 은행은 해외은행명, 은행주소, 입금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상이 등으로 자동대체 처리하여 해외로 송금한 대금이 해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③ 전쟁, 천재지변, 전산장애, 정전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서비스 처리방법)
① 은행은 이용자의 개별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서상의 서명 또는 인감이 기 등록된 서명 또는 인감과의 일치 여부 및 유선으로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ARS에 의한 출금계좌 비밀번호 인증 후 처리합니다.
② 법인인 이용자가 제 1항의 ARS에 의한 출금계좌 비밀번호 인증 적용을 원치 않을 경우는 약정서에 그러한 뜻을 기재하고, 법인의 책임하에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이용수수료)
이용수수료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따르기로 하며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.

제7조 (서비스 이용의 변경 ·해지)

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 등록지점이 변경·해지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는 변경 또는 해지 됩니다.

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정일(또는 최종거래일)로부터 1년이상 장기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사전 서면 및 유선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준용규정)

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환거래기본약관,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, 타행환공동망 업무규약 및 동 업무 세부처리지침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9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를 적용(준용)합니다.

준법감시인 심사필 : 제 2019-약관-034 호 [2019.01.29]